성주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 안 자 : 성주군수

2. 제정이유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성주군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성주군 노사민정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협력과 상생의 노사 관계발전을 통하여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다.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협의회 위원 임기, 위촉 해제, 회의소집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제7조)
마.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간사, 서기, 수당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성주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지급
다. 입법예고 : 의견없음 〔2017. 10. 16. ~ 11. 5〕
라. 성별영향평가분석 : 해당사항 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성주군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성주군 노사민정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협력과 상생의 노사 관계 발전을 통하여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3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협의회의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와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관련 공무원이나 전문가에게 의견 청취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법리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민정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노사관계발전을 통하여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